

2. 의료기관 및 약업소 점검현황

확인자 : 보건위생과장 심재희 (인)

작성자 : 예방의약담당 임태영 (인)

[약업소]

[2005년]

업종	업소명	대표자	청문(의견제출)일자	처분일자	위반내용 (위반법규)	처 분	
						처분기준	실제처분
약국	월드약국	김재숙	2005.02.28	2005.03.10	마약류 판매에관한내용 미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11조 (기록의정비) -시행규칙제43 조 -동법 제46조(과징금처분)-	업무정지 1월에달응하는 과징금부과 (900,000원)
약국	열린약국	박람회	2005.02.25	2005.03.16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	-약사법제38조 -동법시행규칙제57조제1항 제8호 -제89조(별표6)행정처분의기준 제38호가목	업무정지 3일에달응하는 과징금부과 (1,710,000원)
약국	새시장 약국	최철수	2005.07.01	2005.07.04	처방의 변경,수정	약사법 -제23조제1항 -제71조제2항 제1호 -동법시행규칙제89조(별표6) 행정처분의 기준 개별기준제14호바목	업무정지15일
약국	신동주 약국	김순석	2005.07.05	2005.07.12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 -마약류관리대상 마약류판매등에 관한 내용을 일부 미기재	-약사법 제38 동법시행규칙제57조제1항제8 -시행규칙 제89조 행정처분의기준 개별기준 38호 가목 -마약류 관리에관한 제11조(기록의정비) -마약류 관리에 관한시행규칙 제43조 -동법 제46조(과징금처분)	업무정지 3일에달응하는 과징금부과 (360,000원)
약국	한진약국	유신립	2005.08.12	2005.08.17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저장,진열	약사법 -제38조시행규칙제57조제1항 제8호 -제69조(허가취소와업무정지) 및시행규칙제89조 (행정처분기준) -제71조3(과징금처분)및시행령 제29조(과징금산정기준)	업무정지 3일에달응하는 과징금부과 (1,620,000원)

업종	업소명	대표자	청문(의견 제출)일자	처분일자	위반내용 (위반법규)	처분	
						처분내용	실제처분
약국	동남약국	도기곤	2005.11.22	2005.11.28	처방전없이 위조 비아그라 5정판매	약사법 -제41조제2항제55조, 제56조 -시행규칙 제89조 행정처분의기준 42의2 및 52 다 -약사법 제71조의3(과징금처분)및 시행령 제29조(과징금산정기준)	업무정지 22일에같은하 는과징금부과 (660,000원)
약국	울릉 녹심자 약국	김영일	2005.11.09	2005.11.28	오.남용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 되는 비아그라 처방전없이 판매	약사법 -제57조 제1항 13조 나목 -시행규칙 제89조 행정처분의 기준38호가 -제71조의3(과징금처분) 및 시행령 제29조(과징금산정기준)	업무정지 3일에같은하 는과징금부과 (1,440,000원)
약국	유일약국	박미선	2005.11.10	2005.11.28	처방전 없이 위조품의약품 비아그라 판매 및 판매목적 보관	약사법 -제41조 제2항 및 제55조, 제56조 -시행규칙 제89조 행정처분 기준 42의2 및 52 다 -제71조의3(과징금처분) 및 시행령제29조 (과징금산정기준)	업무정지22일 에같은하 는과징금부과 (2,640,000원)
약국	대평양 약국	이광우	2005.11.18	2005.11.28	오.남용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의약품 을 처방전 없이 판매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13조 나목 -시행규칙 제89조 행정처분의 기준38호 가 -제71조의3(과징금처분) 및 시행령 제29조(과징금산정기준)	업무정지3일에 같은하 는과징금부과 (630,000원)
약국	동성약국	김홍배	2005.11.20	2005.11.28	전문약품 비아그라 처방전 없이 판매	-약사법제41조 제2항 -시행규칙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42의2 -약사법제71조의3(과징금처분) 및 시행령 제29조(과징금산정기준)	업무정지15일 에같은하 는과징금부과 (7,200,000원)
약국	엘림약국	최침미	2005.11.16	2005.11.30	처방전 없이 위조약품 비아그라 판매 및 판매목적 보관	-약사법 제41조 제2항 및 제55조, 제56조 -시행규칙 제29조 행정처분의 기준 42의2 및 52 다	업무정지22일 연허자격정지 15일

업종	업소명	대표자	청문(의견 제출)일자	처분 일자	위 반 내 용	처 분 내 용	
						처분기준	실제처분
병원	금촌의료원	김준형	2005.1.14	2005.1.31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건강진단미실시	의료법제32조2, 행정처분기준2개별기준 나.(8)-(라)	시정명령
의원	금촌정형 외과	김홍우	2005.1.14	2005.1.31	세탁물 자체 처리,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건강진단미실시	의료법제17조, 제32조2, 행정처분기준2개별기준 나-(1),(8)-(라)	시정명령
병원	파주영지 병원	권태형 외4인	2005.1.14	2005.1.31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건강진단미실시	의료법제32조2, 행정처분기준2개별기준 나.(8)-(라)	시정명령
치과 의원	이샘 치과의원	이병엽	2005.6.20	2005.7.7	6개월간 휴업신고 없이 휴진함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71조제3항제4호	경고, 과태료 50만원
한의원	계성 한의원	김중훈	2005.7.27	2005.8.3	인터넷광고범위일탈	의료법제 46조 제4항	경고
의원	현대 정형외과	안상선	2005.7.27	2005.9.15	세탁물 자체처리	법제17조, 행정처분기준2 개별기준 나-(1)	시정
의원	뉴서울 의원	차영규	2005.7.27	2005.9.15	세탁물 자체처리	법제17조, 행정처분기준2 개별기준 나-(1)	시정
의원	통일천 삼성의원	성호식	2005.7.27	2005.9.15	세탁물 자체처리	법제17조, 행정처분기준2 개별기준 나-(1)	시정
의원	교하 하나의원	고영배	2005.7.27	2005.9.15	세탁물 자체처리	법제17조, 행정처분기준2 개별기준 나-(1)	시정
의원	통일천성심 연합의원	김한철 외1인	2005.7.27	2005.9.15	세탁물 자체처리	법제17조, 행정처분기준2 개별기준 나-(1)	시정
의원	문산서울 정형외과 의원	김태진	2005.7.27	2005.9.15	세탁물 자체처리	법제17조, 행정처분기준2 개별기준 나-(1)	시정
병원	민들레병원	이 송	2005.8.1	2005.9.15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수 미달	정신보건법제12조제3항제1호, 행정처분기준2 개별기준다	경고
의원	서울안과	조윤성	2005.10.4	2005.10.19	인터넷광고 범위일탈	법제46조제4항, 행정처분기준2 개별기준 나-(19)	경고

업종	업소명	대표자	청문(의견 제출)일자	처분 일자	위 반 내 용	처 분 내 용	
						처분기준	실제처분
의원	금촌피부 비뇨기과	소재균	2005.10.4	2005.10.19	인터넷광고 범위일 탈	법제46조 제4항,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나-(19)	경고
의원	한사랑외과	윤형중, 신영선	2005.10.4	2005.10.19	인터넷광고 범위일 탈	법제46조 제4항, 행정처분기준2 개별기준 나-(19)	경고
병원	금촌 의료원	최영인	2005.12.15	2005.12.30	방사선발생장치 미신고 사용(2대)	제32조2 제1항, 제71조 제1항, 안전관리규칙 제18조, 행정처분 기준2 개별기준나.(8)-(가)	시정, 과태료 100만원
치과 의원	어른과아이 들치과	임석중	2005.12.15	2005.12.30	근무의사 미신고 2인	법제30조 제6항, 법제71조 제3항 제3호, 의료법시행규칙 제61조(과태료부과기준).	경고, 과태료 30만원

구분	업소명	대표자	청문(의견 제출)일자	처분일자	위반내용 (위반법규)	처분내용	
						처분기준	실제처분
약국	문산시장 약국	정경민	2006.01.13	2006.01.13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	-약사법 제38조(시행규칙 57조 제1항 제8조 -약사법 제41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89조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38조 가목 및 제42의2 -동법시행규칙 제89조 행정처분의 기준 I 일반기준 1.가 및 2다 -약사법 제71조의3(과징금처분) 및 시행령 제29조(과징금산정기준)	업무정지 16일에 같은하는 과징금 부과 (9,120,000원)
약국	엘리트약국	최정미	2005.12.19	2006.01.09	처방의 변경, 조제	-약사법 제23조 제1항 -약사법 제71조 제2항 제1호 -동법시행규칙 제89조 [별표6]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 14호 바목	업무정지 15일
약국	늘푸른 약국	이광재 차지은	2006.03.13	2006.04.05	의사의 동의없이 변경조제	-약사법 제23조 제1항 -시행규칙 제89조 [별표6] 행정처 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14호 바목 -행정처분의 기준 제89조 관련 일반기준 제10호 -행정처분의 기준 제89조 관련 II 개별기준 제4호 나목 -약사법 제71조의3(과징금 처분) 및 시행령 제29조(과징금산정기준)	-업무정지 15일 에 같은하는 과징금 부과 (450,000원) -연허자격정지 15일
약국	21세기 성심약국	강영희	2006.05.13	2006.05.16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 -위조의약품 판매	-약사법 제41조 제2항 -동법 제55조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89조 [별표6]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42의2 제52의 다목 -동법시행규칙 제89조 행정처분 기준 1.가. 및 2.다 -약사법 제71조의3(과징금 부과) 및 시행령 제29조(과징금산정기준)	업무정지 22일에 같은하는 과징금 부과 (11,880,000원)

[약업소]

[2006년]

구분	업소명	대표자	청문(의견제출)일자	처분일자	위반내용 (위반법규)	처분내용	
						처분기준	실제처분
약국	덕은약국	하봉철	2006.06.29	2006.07.03	-성인5일이상을 초과하여 전문의약품 판매	-약사법 제38조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제13호 가목 -동법시행규칙 제89조 [별표6]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제38호 가목 -약사법 제71조의3(과징금처분)및 시행령제29조(과징금산정기준)	업무정지3일에 같은하는 과징금부과 (90,000원)
약국	한가족 약국	이애리	2006.08.10	2006.08.10	-유효기간경과 의약품판매 목적으로 저장, 진열 -약국개설자가 약국을관리하지 않음	-약사법제38조, 제19조 -동법 시행규칙제57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제89조 [별표6] 행정처분의기준II개별기준제8호 나목	업무정지8일

[의료기관]

[2006년]

업종	업소명	대표자	청문(의견제출)일자	처분 일자	위 반 내 용	처 분 내 용	
						처분기준	실제처분
의원	현대 미소래 산부인과	이상형 외3인	2006.4.7	2006.5.17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함	법제25조, 행정처분기준2 개별기준나(2), 행정처분기준1 공동기준 감경대상(1) 기소유예, 법시행령 제33조	과징금 20,25만원 (행정소송중)
치과 의원	중앙치과	이상열	2005.4.5		의료인에게 면허된 의료행위 외의 의료 행위를 하게함.	법제25조 제1항, 제51조 제1항 2호	의정부검찰청 고양지청 처분결과 형의없음으로 동보 받음.

- 2006년(8월말 현재)에는 의료기관과 약업소 점검을 50%정도만 점검을 하였는데 그 이유와 점검시기와 점검내용은? (유병석 의원)
- 의약분업이후 의료기관, 약업소 개설이 급증하여 1년에 1회로 전업소를 정기 점검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철저한 지도, 점검, 감독을 위하여 1년에 2번 상반기(4월~5월), 하반기(10월~11월)로 나누어 점검을 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대상 업체 의료기관 222개중 84개, 약업소 108개중 53개 점검하였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점검할 예정임.
- 점검내용은 의료법, 약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을 준수사항 등을 점검함.